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경찰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
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경찰청은 위험한 현장에서 잦은 부상을 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8. 4. 25.부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 규정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에 걸린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에게 ‘공무상 요양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음.

특별위로금 지급은 위험한 직무를 감수한 공상경찰관에 대한 위로와 예우로서,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승인된 요양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특별위로금을 승인된 요양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으로써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이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출근했다는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로금 “지급일수 확대”

- 1) 현정부 국정과제(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실천과제로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선정.
- 2) 특별위로금 지급은 위험한 직무를 감수한 공상경찰관에 대한 위로와 예우로서 공무상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승인된 요양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함으로써, 위험직무 공상경찰관이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출근했다는 이유로 특별위

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 필요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각 호에 따른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을 “각 호의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간”으로 하고,

제11조제4항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에 복귀한 날(공무상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를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상요양 승인일이 승인된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공무상요양 승인일
 2. 공무상요양 승인일이 승인된 요양기간 내인 경우는 요양기간 종료일
 3. 공무상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
- 별표와 별지 서식은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산정방식(제11조제3항 관련)

1. 승인된 요양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text{지급금액} = \frac{\text{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0\text{일}} \times 0.13 \times \text{승인된 요양일수}$$

2. 승인된 요양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begin{aligned} \text{지급금액} = & \frac{\text{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0\text{일}} \times 0.13 \times \underline{180\text{일}} + \\ & \frac{\text{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30\text{일}} \times 0.0325 \times (\text{승인된 요양일수} - 180\text{일}) \end{aligned}$$

비고

1.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2.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해당 연도 고시 이전까지의 기간에는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적용한다.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 속		계급		성명	
주 소					
승인 질병·부상명					
공상 연월일	. . . (:)		공상 장소		
공무상요양 승인일	. . .				
승인된 요양기간	. . . ~ . . .		. . . ~ . . .		
특별위로금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

첨부서류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			
결 재	담당자	계장(팀장)	과장	서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생략)	제11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로금은 경찰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으로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 ----- -- 각 호의 공무상요양(이하 “공무상요양”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승인된 요양기간-----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또는 그 유족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u>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에 복귀한 날(공무상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는 퇴직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④ ----- ----- ----- ----- <u>공무상요양 승인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u> ----- ----- -----.
1. <u>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사본</u>	1. <u>공무상요양 승인일이 승인된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는 공무상요양 승인일</u>

<u>2. 입·퇴원확인서</u> <u>3. 개인별 근무상황부 사본</u>	<u>2. 공무상요양 승인일이 승인된 요양기간 내인 경우는 요양기 간 종료일</u> <u>3. 공무상요양 중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는 각각 사망일 또 는 퇴직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2746